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 분야의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변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99. 99. ~ 99. 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u>나등급</u> 으로 한다.	제2조(대변인) ① ----- ----- ----- ----- <u>가등급</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